



보건복지부	보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9. 11. / (총 12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연 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성 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현 수	044-200-2295
서울특별시		정 일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효 연	02-2133-7669
인천광역시		광 찬	032-440-7801
코로나19대응 추진단		은 실 전 화	032-440-7849
경기도		덕 희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문 갑	031-8008-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del>-</del> ~.	경 숙	044-202-1740
특별전담팀		대 일	044-202-1741
경 찰청		병 우	02-3150-2083
정보3과		희 규	02-3150-238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건의,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건의,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 8월 집회에서와 같이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절대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개천절 계기 집회에 대한 물 샐 틈 없는 방역 사전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서울시와 경찰청에게 지난 번 경험을 교훈삼아 사전에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여 개천절 계기 집회가 또다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발생지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 □ 정 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이 현실에 맞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자체에게 현실에 맞지 않거나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운 점 등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개인정보보호와 방역 정책이 조화를 이루며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정부가 추석연휴 중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께 이동 최소화를 당부드리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고향을 찾도록 유도하는 시책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게 소관 시책들이 정부의 방역 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하였다.











###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백화점, 쇼핑몰 등을 통한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9.11.)부터 9월 14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 이번 점검에서는 문화센터·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용시설 운영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고 시식 구역(코너) 운영 여부, 집객 행위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최근 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택배 물류센터 등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 금지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9월 27일까지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9월 13일 까지 190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전면 휴강 조치하는 한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한편,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다수의 성묘객이 일시에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SNS 게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미리 성묘", "온라인 성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경기도**는 신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설 소독, 접촉자 분류 및 검사 실시, 감염 경로 추적 등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로부터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계와 소통하여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종교활동도 지워**하고 있다.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통 3사, 국내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네이버 밴드, 카카오TV)와 협업하여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에 대해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 중이다.
    - 우선, 전용 전화 상담실(국번없이 1433-1900)를 운영하고, 종교 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월 50기가의 자료 (데이터)를 2개월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 아울러 **단말기 교육, 영상 업로드, 영상 시청 방법 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위한 현장방문도 진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8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 3,407건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상반기(787건)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 향후 자막 기능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는 등 **사용안내서**(매뉴얼)를 보완하고, 온라인 종교활동에 대한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 정부와 종교계는 코로나19 대응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종교시설의 코로나19 방역조치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3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 시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9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3만 2226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 명부 사용 여부와 수기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 □ 점검결과 1만 8159개소(56.3%)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였으며,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 3704개소(42.5%)로 나타났다. 363개소(1.2%)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 \*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더라도 2G폰 이용자, 스마트폰 미소지자, 전자출입 명부 사용거부자 등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
  - 한편, 수기명부 작성 시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4%, 4주 후 파기는 97.7%의 시설에서 준수하고 있었다.
  -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과 수기명부를 작성 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점검과 홍보를 통해 **수기명부 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기명부 작성 방법 개선**하여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4주 후 파기 등 원칙을 준수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 4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청장 김창룡)로부터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3일 (토)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291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78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였다.
    - 특히, 10인 이상으로 도심권 집회를 신고한 경우는 총 9개 단체, 32건으로 이 가운데 6개 단체는 지난 8월 15일에도 집회를 신고한 단체이다.
  -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 설득하는 한편,











- 서울시가 지난 8월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 현재까지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판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9월 10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1990명이 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21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3774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014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9.1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4명**을 적발하여 이 중 3명은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 9월 10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2,548개소, ▲ 실내체육시설 4,077개소 등 35개 분야 총 6만 435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324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홍시설 2만 35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345반, 1,556명)하여 심야 시간 (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
  - 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3.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당 용 설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보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접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 오락실, 워타파크, 종교시설, 실배 결혼사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시위나, 멀티 방D/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 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독서실·스타디 카페· 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한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 당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상), 뷔페, PC방  O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 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시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O 해당사항 없음  O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기과 기어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기관, 기업	민간	O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b>근무인원 제한 권고</b>			

※ 음영 표시된 조치들은 9.13(일) 자정까지, 이외 조치들은 9.20(일) 자정까지 적용











### 붙임2

##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 주요 사례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사랑제일교회 장로님과 전도사님 부부가 보건소에서 확진 받고 백백원에서 재검했는데 음성판정 오늘저녁 <u>7시</u>에 나왔습니다

설마설마했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나오시는분들은 무조건 병원에서 재검 받으세요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











# 붙임3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